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45”를 “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4”를 “6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5”를 “62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47”을 각각 “1,33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334”를 “1,32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신설></u> 16. (생략)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45</u>	· <u>643</u>	-2
·	·	·	
·	·	·	
일반직 계	<u>644</u>	<u>642</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5</u>	<u>623</u>	-2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7</u>	<u>1,339</u>	-8
일반직 계	<u>1,347</u>	<u>1,339</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34</u>	<u>1,326</u>	-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4